

<b>보도</b>	<b>2024.6.25.(화) 조간</b>	<b>배포</b>	2024.6.24.(월)
<b>담당부서</b>	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	<b>책임자</b>	국 장 권재순 (02-3145-7270)
		<b>담당자</b>	팀 장 김태훈 (02-3145-7260)

##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

### - ②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

**< 주요 내용 >**

① '부당승환'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 리모델링,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.

\* (예) 암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이라고 다른 암보험을 소개하며 갈아타도록 권유

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나,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,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②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.

향후에는 기관제재(GA 영업정지 등)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, 의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(등록취소 등)해나갈 예정입니다.

③ 보험소비자분들께서는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,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, 판매 설계사 및 GA의 평판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.

부당승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가 가능\*하므로 보험회사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라며, 만약 보험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\*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

※ 동 연속기획 보도자료는 빈번하게 적발되어온 주요 위법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로 모든 규제사항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,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시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I 추진 배경

-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(이하 'GA')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5월부터 GA의 주요 위법사례 및 향후 검사·제재 운영 방향을 연속기획물(시리즈)로 공유·전파하고 있으며,
  - 그 첫 번째로 '작성계약\*(허위·가공계약) 금지 위반사례' 등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('24.5.28. 보도)한 바 있습니다.

\* 보험 모집·체결과정에서 가족·지인 등 다른 사람(명의인)의 이름을 차용하여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·가공의 보험계약

- 이번에는 연속기획 두 번째로 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'부당 승환계약'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.

<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연속기획물 >

회 차	주 제
1	작성계약(허위·가공계약)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·제재 방향('24.5.28.)
2	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

## II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행위

- (개념) 부당승환이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,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(소위 '보험 갈아타기')를 의미합니다.
  - ※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①피보험자가 동일하고, ②위험보장 범위가 생명보험상품, 손해보험상품,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에만 해당(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43조의2 제1항)
- 현행 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

**<참고> 「보험업법」 제97조**

제97조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5.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(이하 이 조에서 "기존보험계약"이라 한다)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... (후략)
-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  1.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. 다만,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2.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

□ **(부당승환의 기준)** 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3항은 신계약 체결 전·후 6개월(또는 1개월) 이내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,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\*하고 있으며,

\* (참고) 부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, 객관적으로 판단 및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「보험업법」은 특정 조건의 계약을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

○ 다만, 해당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안내(6개월 이내)하거나, 보험계약자가 손실가능성을 자필 서명 등으로 확인(1개월 이내)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합니다.

□ **(발생 원인)** 설계사가 판매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보험 리모델링,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현혹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함에 주로 기인합니다.

○ 특히,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<sup>1)</sup>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<sup>2)</sup>은 부당 승환계약 양산<sup>3)</sup>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.

- 1) 최근 GA 대형화, 자회사형 GA 증가 등으로 설계사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
- 2) 일부 GA는 경력설계사를 스카우트하면서 1~2억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
- 3) ①설계사별 지원금 증가 → ②신계약 목표실적 증가 → ③실적 부담 → ④보험계약 승환 유도

□ **(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)** 소비자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, 피보험자 연령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고,

-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(예: 암보험 가입 시 90일 후 보장 개시)이 다시 적용됨에 따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됩니다.
-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,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, 판매 설계사 및 GA의 평판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.

※ <참고> '21.4.22. 금감원 보도자료 「중신보험 갈아타기(중신보험 리모델링) 소비자경보 '주의' 발령」(바로가기)

**< 부당 승환계약 발생 예시 >**

· 중신보험의 보장을 강화(사망보험금 4천만원 → 5천만원)하는 과정에서 사망보험금 증액 대신, 기존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시킴



**<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>**

<p><b>금전적 손실</b></p> <p>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* 수령</p> <p>* (예) 납입보험료 2,700만원 / 해약환급금 2,200만원</p>	<p><b>보험료 상승</b></p> <p>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신계약 보험료 상승*</p> <p>* (예) '05년 가입 월 99,000원 / '19년 가입 월 187,000원 (유사조건 보험)</p>	<p><b>보장 단절</b></p> <p>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* 재산정</p> <p>* (예) 암보험 재가입 시 90일 후 보장 개시</p>
---	---	--

### Ⅲ 위반 시 제재 양정기준 및 최근 제재 실적

- **(제재 양정기준)**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서는 위법·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전제재(과태료, 「보험업법」 제209조) 및 기관·신분제재(등록취소 등, 「보험업법」 제86조 및 제88조 등)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-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고, 등록취소,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<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부과 가능한 조치 >

구분	GA	GA 소속 임직원	GA 소속 설계사
조치 종류	과태료, 등록취소, 업무정지(6개월 이내), 주의·경고	주의·경고, 문책요구, 해임권고·직무정지(임원)	과태료, 등록취소, 업무정지(6개월 이내)
근거 조항	법 제88조 제2항 제1호 및 제7호, 제97조 제1항 제5호, 제134조 제1항, 제136조 제1항, 제209조 제5항 제7호 및 제10호	법 제97조 제1항 제5호, 제134조 제1항, 제136조 제1항	법 제86조 제2항 제1호, 제97조 제1항 제5호, 제209조 제5항 제10호

- **(최근 제재 실적)** 지난 4년간('20~'23년)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GA(10개사)에게는 과태료(총 5.2억원) 및 기관경고·주의가 부과되었으며,
- 소속 임직원(2명)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, 설계사(110명)에게는 업무정지(30~60일) 및 과태료(50~3,150만원)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.

< 최근 4년간('20~'23년) 부당 승환계약 관련 주요 제재사례 >

회사명	기관 제재	임직원 제재	설계사 제재
A사	과태료 3억 660만원 기관경고	퇴직자 위법사실통보: 1명 주의: 1명	업무정지(30~60일): 2명 과태료(20~3,150만원): 53명
B사	과태료 9,760만원	-	과태료(20~500만원): 28명
C사	과태료 4,160만원 기관주의	-	업무정지(30일): 1명 과태료(2,700만원): 1명
기타 (7개사)	총 과태료 7,750만원 기관주의	-	업무정지(30일): 2명 과태료(20~770만원): 28명
계 (10개사)	총 과태료 5억 2,330만원 기관경고, 기관주의	퇴직자 위법사실통보: 1명 주의: 1명	업무정지(30~60일): 5명 과태료(20~3,150만원): 110명

주1) '20~'23년 보험검사3국(舊 보험영업검사실)의 GA 지적사항 중 부당 승환계약 관련 지적사항만 추출  
주2) 제재 병과 시 인원수 별도 계산(예: 업무정지 30일 & 과태료 50만원 → 업무정지 +1명, 과태료 +1명)

### Ⅳ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구축

※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그간의 제도(시스템) 개선사항 중 최근 내용을 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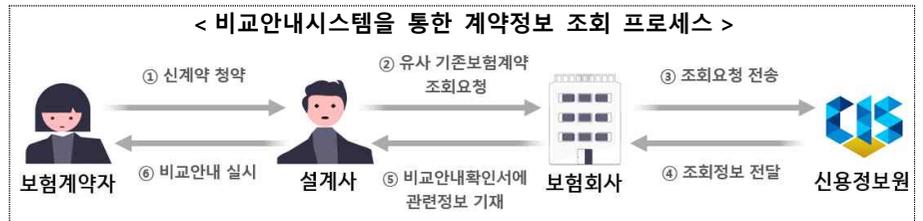
- **(개요)** '24.1월 금융당국·보험업계·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.

※ 신계약 체결 전·후 6개월 이내 기존보험계약 소멸이 존재·발생하는 경우 설계사는 기존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, 위법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설계사는 신계약 모집 시 고객의 기존보험계약 내역 확인 후 신계약과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할 필요

- **(개선내용)** 동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설계사가 고객의 타사 보험 계약정보를 정확히 확인\*하기 어려웠고, 금감원도 타사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웠습니다.

\* 고객(보험계약자)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확인(부정확)

- 그러나 이제는 보험회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기존보험계약 유무 확인 및 비교안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, 비교안내 이행 여부 점검도 매우 용이해졌습니다.



- **(기대효과)**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현황·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신계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금전적 손실, 보장 단절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,

- 설계사 입장에서보다 충실한 비교·설명이 가능해지는 한편, 의도치 않게 위법행위(부당 승환계약)의 행위자가 될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※ 상세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참고

- '23.10.23. 금융위·금감원 「금융당국,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」(바로가기)
- '23.12.22. 생·손보험회 「보험업계, 보험계약 이동시 비교안내 실효성 제고」(바로가기)

## V 향후 계획

- ①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.
  - 그러나 향후에는 기관제재(GA 영업정지 등)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,
  -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.
- ② 향후 금융감독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\*를 강화하는 한편,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.
  - \* 13회차/25회차 유지율, 정착지원금 지급규모 등 상시감시지표 지속 점검
  - 특히,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.
- ③ 아울러, 금융감독원은 부당 승환계약 등 불법·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.
  - 비교안내시스템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 이외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,
  -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,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.

### <참고>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대응방안

- ① 부당승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존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 가능\*(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4항)
  - \*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
- ② 부당승환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①번에 따른 보험회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(피해구제 요청) 제기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## 붙임1 부당 승환계약 위법 사례

회사명	조치요구일	위법 내용
A사	'21.12.17.	<p>법인보험대리점 A사의 소속 설계사 甲 등 53명은 2017.11.29. ~ 2020.5.25. 기간중 총 162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170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였다.</p> <p>설계사 甲은 '청약철회'가 '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'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, 청약철회된 기존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이행하지 않았다.</p> <p>A사에게는 과태료 3억 660만원과 기관경고, 소속 설계사에게는 과태료(20~3,150만원)와 업무정지(30~60일)가 부과되었다.</p>
B사	'23.6.9.	<p>법인보험대리점 B사의 소속 설계사 乙 등 28명은 2020.1.16. ~ 2021.5.24. 기간중 총 85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87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였다.</p> <p>설계사 乙은 고객과의 상담을 위해 작성된 '리모델링 리포트'를 제시하며 비교안내 이행을 주장하였으나, 「보험업법 시행령」(제44조제1항)에서 요구하는 비교안내 항목* 중 다수가 누락되었고, 또한 보험회사에서 보관·관리하는 비교안내확인서를 통해 입증(영 제44조제2항, 법령해석(190292))되지 않았기에 수용되지 않았다.</p> <p>* 보험료,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,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내용,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, 공시이율, 보험목적 등</p> <p>B사에게는 과태료 9,760만원, 소속 설계사에게도 과태료(20~500만원)가 부과되었다.</p>
C사	'23.9.15.	<p>법인보험대리점 C사의 소속 설계사 丙은 2021.7.20. ~ 2021.8.27. 기간중 총 1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16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였다.</p> <p>설계사 丙은 계약자가 비교안내확인서를 통해 '소멸(예정) 계약이 없다'고 답변하였기에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, 丙이 기존계약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수용되지 않았다.</p> <p>C사에게는 과태료 4,160만원과 기관주의, 설계사 丙에게는 과태료 2,700만원과 업무정지 30일이 부과되었다.</p>

\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내 '업무자료 - 검사·제재 - 제재관련 공시' 메뉴에서 제재내용 확인 가능

## 붙임2 관련 법령

### □ 「보험업법」

#### 제8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(생략)

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(후략)

#### 제88조(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) ① (생략)

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2~6. (생략)

7.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,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

#### 제97조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~4. (생략)

5.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(이하 이 조에서 “기존보험계약”이라 한다)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

6~11. (생략)

② 삭제

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. 다만,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

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(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.

⑤~⑥ (생략)

#### 제134조(보험회사에 대한 제재)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(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」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제4호,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
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(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1.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·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·경고·문책의 요구

2.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

3. 임원(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.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)의 해임권고·직무정지

4.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

#### 제136조(준용) ① 국내사무소·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보험회사”는 각각 “국내사무소”·“보험대리점” 또는 “보험중개사”로 본다.

#### 제209조(과태료) ①~⑥ (생략)
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~6. (생략)

7.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·제96조제1항·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. 다만,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
7의2~9. (생략)

10.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(후략)

### □ 「보험업법 시행령」

#### 제43조의2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(이하 “기존보험계약”이라 한다)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

2.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, 손해 보험상품,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

②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.

1.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

2. 기명날인

3. 녹취

4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

③ 보험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

#### 제44조(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·고지사항) ①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“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보험료,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

2.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

3.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

4.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

5. 보험 목적

6.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

②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